

서울장학재단 2010년 사업운영계획

2010. 2.

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
Seoul Scholarship Foundation

(재)서울장학재단 2010년도 사업 운영

I 사 업 개 요

■ 설립목적

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과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, “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”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■ 설립개요

- 설립근거 : 민법 제32조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- 재단명칭 : 서울장학재단(Seoul Scholarship Foundation)
- 기본재산 : 5억원('09년 서울시의 출연금)
 - 적립목표 : 500억원(2011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적립)
 - ※ 2010년은 예산사정으로 적립 불가
 - 재원조성 : 시 출연금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
- 운영재산 : 193.81억원
 - 사업분야 : 대학원분야 61.73억, 사회봉사분야 10억, 고등학교분야 차상위계층 100억, 자립형사립고(하나고등학교) 1.65억, 기타장학사업비 15.2, 직원 인건비 1.61억, 재단 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 등 3.62억
 - 재원조성 : 시 출연금 77.79억, SH공사 기탁금 100억, 09년 세계잉여금 16.02억

- 재단조직 :
 - 비상근 이사장·이사·감사, 사무국장(교육기획관 겸직)
 - 사무국직원 : 부장 1명, 기금·홍보 1명, 예산·회계 1명(3명)
- 주요사업(Hi Seoul 장학사업)
 - 대학·대학원(과학, 인문학)분야 : 연 1,678명, 61.73억
 - 고등학교분야
 - ▶ 차상위 계층 : 약 22,000명, 100억(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)
 - ▶ 자립형사립고(하나고등학교) : 30명, 1.65억
 - 기타 장학사업비 : 15.2억

■ 추진경위

- '08. 5.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·시행
- '08.12. 8 재단 법인설립허가(서울특별시교육청)
- '09. 1. 8 재단 설립등기(상업등기소)
- '09. 1.13 재단 비영리 사업자 등록(남대문세무서)
- '09. 9.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('10.7.1. 시행)

II 2010년도 서울장학재단 사업계획

1 대학원분야 장학금

인문학 및 기초과학, 기초연구분야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기초학문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

【인문학 · 과학분야 장학금】

■ 사업개요

- 선발분야
 - 인 문 학 : 어문, 사학, 철학, 교육학, 디자인, 기타계열
 - 기초과학 : 수리과학, 물리학, 화학, 생물학, 지구과학, 공학 분야
- 선발대상
 -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인문학 및 기초과학·기초연구분야 전일제(취업자 제외) 박사과정 재학생(진학예정자 포함)으로서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
 - 석·박사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해 지원가능
 - 석사 2학기 이수 후 석·박통합과정시험 대상자의 경우 지원가능
- 선발인원 : 반기별 300명(연 600명) - 인문학 150명, 과학 150명
- 지급금액 : 연 60억원(1인 1년 기준 : 과학 600만원, 인문학 500만원)
- 지급기간 : 일정자격 유지 시 2년간 지원

■ 사업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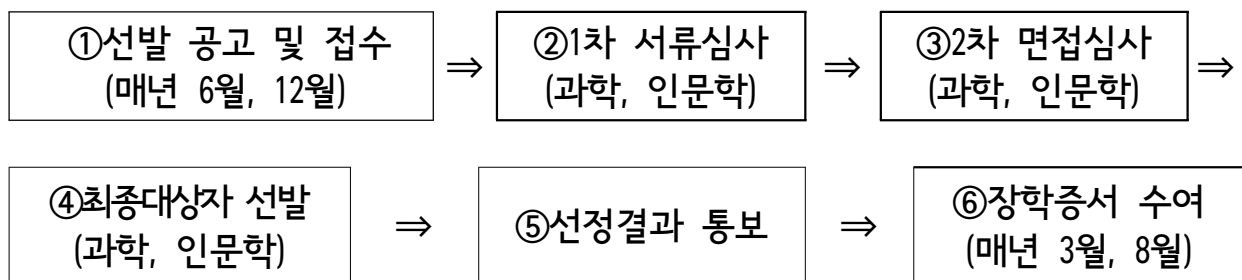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/억원)

구 분	계	2009년	2008년	2007년	2006년	2005년
수혜학생 수	6,941	1,696	1,803	1,764	1,289	389
지원 금액	193.24	46.68	49.67	48.79	36.42	11.68

■ 선발방법

- 우수성기준 선발 : 50%
 -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우수성을 기준으로 선발
- 학교별 인원 안배 : 50%
 - 각 대학별 적격 지원학생수를 고려하되, 대학별 최소 1명이상 선발
(신청대학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외)

■ 장학생 선발절차



【특별(과학)분야 장학금】

■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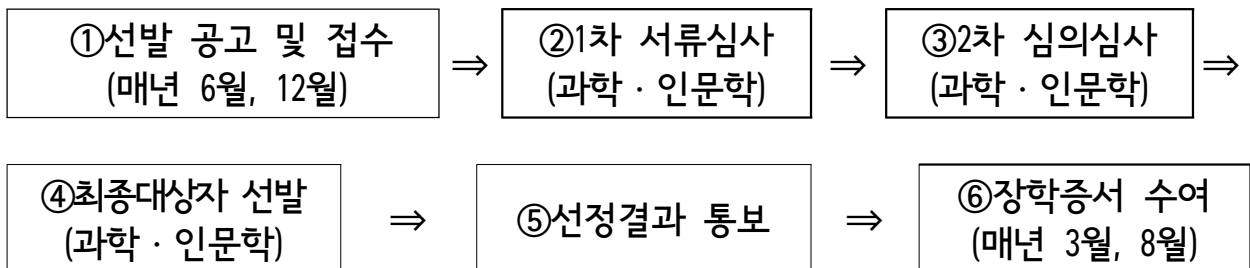
- 선발분야 : 수리과학, 물리학, 화학, 생물학, 지구과학, 공학 분야
- 선발대상 : Hi Seoul 장학금 대학원(과학)분야 수혜자
 - Hi Seoul 장학금 대학원(과학)분야 수혜를 논문에 기술한 경우에 한함

- 선발인원 : 반기별 3명 내외
- 지급금액
 - 특별공적(사이언스, 네이처지 게재 등) : 500만원
 - 우수학생(각 분야 최고 학술지 게재 등) : 300만원
- 지급회수 : 1회

■ 선발방법

- 장학생 심사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우수 연구자 2~3명 내외 추천
- 분야별 추천대상자를 대상으로 장학생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명 선발

■ 장학생 선발절차



② 고등학교분야 장학금

재능은 있으나 현행 학비지원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한 차세대 인재 발굴·양성

【저소득층분야 장학금】

■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서울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(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)의 자녀인 자
- 지원인원 : 연 인원 22,000명(분기별 5,500명)
- 지원내용 :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전액(1인당 연간 평균 1,788천원)
- 장학재원 : 연간 100억원(SH공사에서 기탁)

■ 사업실적

(단위 : 명/억원)

구 분	계	2009년	2008년	2007년	2006년	2005년	2004년
수혜학생 수	29,613	5,500	5,320	4,881	5,072	4,756	4,084
지원 금액	542	100	99	90	91	90	72

■ 선발기준
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,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(수급권자가 아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)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단, 상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자의 갑작스런 실직·파산·질병·가출 사고 등 가정의 경제사정 악화로 긴급하게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학교별 배정인원 내에서 추천가능

■ 선발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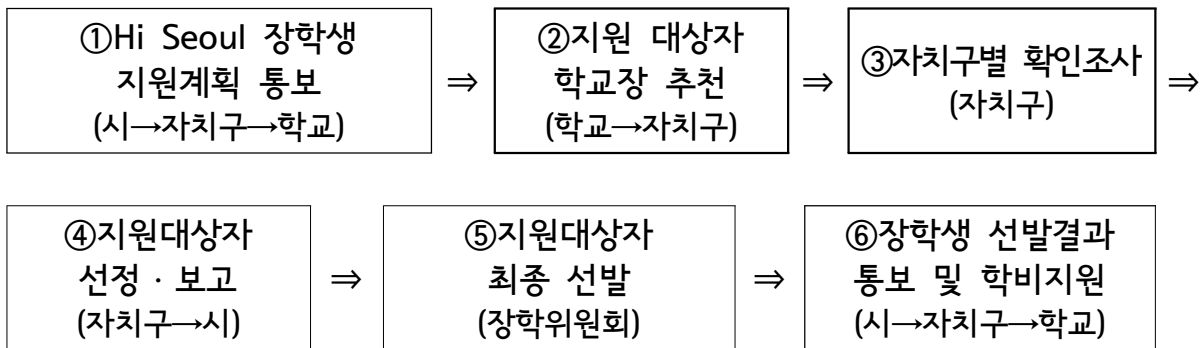
- Hi Seoul 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(9명)
- 선발인원 배정
 - 총 지원대상 인원(5,500명)을 학교(일반, 전문), 학생 수, 학교소재지 자치구의 지역여건(국민기초수급자 수)등을 감안하여 학교별 적정인원 배분
 - 특히 일반고에 비해 전문고교 학생의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상황(계열별 수업료 미납학생 확인 결과 일반고보다 전문고의 비율이 약 2배 높음)을 감안하여 전문고교에 가중치 부여
 - 구 단위 학교별로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내 학교장과 구청장이 상호간 협의하여 관내 학교 간 인원조정 가능
- 선발제외자
 - 서울시 이외의 타 시도 거주자
 - 서울시 거주자 중 타시도 소재지의 고교에 재학 중인 자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자
 - 직장(공무원, 기업체, 은행 등)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
 - 기타 방법으로 이미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
(단, 성적우수자 및 각종 대회 입상자의 포상금 등은 제외)

※ 장학금 환수조치

- 장학금 선발일 이후 이중수혜자, 자퇴자, 서울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 및 전학한 자 등 명백한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조치

■ 선발절차

- 분기별 시행 : 1/4분기(4월), 2/4분기(5월), 3/4분기(8월), 4/4분기(11월)
- 추진절차



【자립형사립고(하나고등학교)분야 장학금】

■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그 곳에서 실거주하는 하나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
- 선발대상자 세부 기준(안) :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함

우선순위	지 급 대 상	지급범위	비 고
1	<p>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자녀</p> <p>※ 한부모가족이란 「한부모가족법」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·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한다</p>	기숙사비	
2	<p>차상위계층</p> <p>※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한다.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외2)</p>	기숙사비	
3	<p>다문화가정자녀</p> <p>(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가족의 자녀)</p>	특강비	
4	<p>다자녀가정 자녀(자녀 3인 이상)</p>	특강비	
5	<p>부모의 급작스러운 실직·파산·질병 등으로 등록금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</p>	특강비	

- 2010년도 최저생계비 현황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근거)

가 구 규 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(원/월)	504,344	858,747	1,110,919	1,363,091	1,615,263	1,867,435
차상위계층소득 기준 (120%)	605,213	1,030,496	1,333,103	1,635,709	1,938,316	2,240,922

- 지원인원 : 연 30명(모집정원의 15%)
- 지원내용 :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비 또는 방과후 특강비 전액
 - 총 학비 : 1,500만원(등록금 540만원, 기숙사비 629만원, 특강비 등 360만원)
- 장학재원 : 165백만원(서울시 출연금)
 - ※ 등록금 지급대상 제외자
 - 직장(공무원, 기업체, 은행 등)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
 - 기타 방법으로 이미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(단, 성적우수자의 포상금 등은 예외)

■ 선발절차 및 방법

- 선발절차 및 일정



- 매분기 등록금 납기일 약 한달 전까지 학교장추천
- 주민등록지별 거주지 구청에 재산소득조회 의뢰
-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사 및 의결
- 선발방법 : 분기별 서울장학재단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

3 기타 신규장학분야 장학금

2009년 세계잉여금을 2010년 장학사업비로 편성하여 신규 장학 사업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원함

■ 추진방향

- 신규 장학사업을 발굴하여 장학금지원

■ 재원 : 15억 2천만원(2009년 세계잉여금)

■ 신규 추진예정 장학사업

- 위기가정 우수학생 지원 장학사업
 - 부모의 실직, 가족해체 등 갑작스런 재난으로 위기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수학생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긴급구조의 디딤돌 장학금 지급
- 전문직인사의 우수학생 후원 장학사업
 -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직 인사들과 정신적·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학생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자신감과 꿈, 희망을 갖을 수 있는 기회 제공